

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생애 최초 특별 공급	○		서약서	-	* 각 청약별 자격확인	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*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	신청자 구비
	○		인감도장	본인	*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	
	○		신분증	본인	*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*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*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*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* 주민번호 전체 표시 /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(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) - 발급기관 :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*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
	○		출입국 사실증명서	세대원	*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	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* 대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대구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복무기간 10년 명시)	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직계 존속	*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)	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및 자녀	* 공고일 현재 혼인 증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*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“미혼인 자녀”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	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* 비사업자의 경우	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*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	
○		소득증빙 서류 (아래표 참고)	본인	*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		
○	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*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의 서류		
대리 계약 추가 서류	○		계약자인감증명서 (위임용) 및 인감도장	-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- 인감증명서 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. - 대리인 :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-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계약체결 장소 비치)	신청자 구비
	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-		견본주택 비치
			위임장	-		
부적격 통보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-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신청자 구비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 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세대주 성명 및 관계’, ‘주소변동이력 및 일자’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 ※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'입주자모집공고일'입니다. (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

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

(※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19세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)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직장 *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	*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	*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•사업자등록증(사본) 	*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(원본) 제출 	*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, •사업자등록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민연금 관리공단 * 세무서
	법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•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세무서 *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•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세무서 *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	*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•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, 근로계약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직장 * 국민연금관리공단
무직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비사업자 확인 각서 (견본주택에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	* 견본주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망.

※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'입주자모집공고일'입니다. (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